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조사 보고서

- 일 시 : 92. 10. 6
- 조 사 지 : 영동군청, 영동군 용화면
현지
- 조 사 자
 - 반장 : 이 병 규 의원
 - 반원 : 윤 태 한 의원
장 인 기 의원

건설위원회 조사확인반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조사 보고서

92. 10. 6 10시 30분 조사단 (이병규의원, 윤태한의원, 장인기의원)은 영등군청 도착 즉시 영등군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질의가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였던 의혹사건이라기 보다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에 치중하였다. 질의도중 문제점이 있었지만 특이할 만한것은 충북 치수 30072 - 209 (92. 4. 1)호로 공사시행허가 통보에 따른 행정지도 감독지시를 받은바 있으나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된다.

그후 즉시 현장으로 출발, 현장에서 실측 및 주민들과 대화도중 별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일단 민원인과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민원인은 의혹에 대하여는 말이없고 주 내용이 폐천부지를 지금까지 점용하였다는데 문제를 삼고 이 폐천부지를 정산 비용으로 정산하지 말고 도에서 예산을 확보, 폐천 부지는 도 공유재산으로 들것을 원하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다. 그후 용화 면사무소에 들러 개발위원장 및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은 서병도 사장을 지역에 기여도를 인정 감사패까지 전달하였다고 하였음) 민원인 (강태운의 점용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것이 좋겠다는 대답이었다.

이제부터는 그후 서류검토 및 질의에서 좀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을 열거하여 상임위원들의 심사숙고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한다.

1) 1991. 7. 24. 무주군수로부터 협의 요청후 7.26 즉시 직원을 현지에 출장케하고 전북 지사에게 전언통신으로 협의 요청을 하라고 한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출장후 1일밖에 안된 7. 27 전북지사로부터 협의 요청공문을 받고 충분한 검토없이 7.29 협의하여 주었다는 것은 소홀히 처리한 인상을 받을수 밖에 없다.

가. 그 이유는 현재 191M 추가공사를 하였다(무주군에서 본도의 협의없이 임의로 허가) 곳을 답사한 의원들로서는 전구간을 정비하여야 할 곳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을 조건부 동의한 것을 잘못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나. 물론 현재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불모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폐천부지가 약 5,000여평 이상이라면 추후 어떠한 공유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폐천 부지로 정산하지 말고 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2) 92. 1. 14 이리 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인가를 받은사항을 92. 1. 18 전북지사의 이첩을 받아 무주군수로부터 시행허가를 받은 내용을 보게되면 공사의 목적과 사유에는 농경지와 인가보호, 홍수 피해의 절감과 식량 증대이나 무주군수가 조건을 부한 내용중에는 13항에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 및 사유가 관광단지 개발로 되어 있는바 이하생략

문서번호 (무주건설 30072 - 113) 관광단지 개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의혹이 갈 수 밖에 없다 (문서별첨)

3) 공문 무주군수 → 충북지사, 문서번호 (30072-113)에 공사구간이 1320M로 표기(임의 추가로 변경허가) 하였으므로 즉시 본도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또한 (문서번호 30072-339) 92. 4. 1자 공문에도 같은 내용의 통보가 있었음. 이러한 사항으로 보아 업무태만이라고 볼수밖에 없음 (문서별첨)

4) 피허가자인 서병도로부터 92. 5. 29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신청이 있어 동년 6. 1자로 무주군수가 변경 인가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년 6. 29자로 서병도에게 설계 변경 요구서, 설계변경 동의서, 각서 등을 징구하였고 공사 감독자인 무주군 건설과 지방 토목기원 배영기의 남대천 세정제 개수공사 감독중 설계 변경 요인 발생에 따른 타당성 북명서를 동년 6.29자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아 허가 처리 절차상 타당성이 결여된 의문점이 있다고 사료됨.

5) 위에서 열거한 몇가지 사례를 보아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처리가 요망되어 당 위원회에서 검토를 바랍니다.

보고자 : 반장 이 병 규 (인)

반원 윤 태 한 (인)

장 인 기 (인)

충청북도의회회장 귀하

문서번호 관설 30074 ~ 1.04
 시당일자 1992. 6. 1.
 (경유) <제 1호>
 수신 내무청서
 장 르

취급	출 회	구 수
부근		
부근수	30074	
과장		토목과장
기안	원 들 수	관리계장
		발 조

제 목: 토목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전주시 북진구 우아동 726-5번지 (주)천중대도
 사행도로부리 하천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에 의하여 하천의 관리 사무처에 개정 제 11조 제 2항
 제 2호의 규에 변경인가 요청 합니다

아 래

개별인가처: 전주시 북진구 우아동 726-5번지
 (주)천중대도 사 행 도

1. 위 치: 부주군 삼천리 청량리 1398번지선

2. 하천명: 삼천천 (중용천)

3. 변경내용

구 분	항 목	변 경
공사금액액	41,000,000 원	460,000,000 원
추진공일	1320 m	1303 m
토 공	토 공 2천	등불림 (계동)
침몰면적	61223 m ²	60445 m ²

제 목

수신번호 30072-15512
 수신번호 30072-15512
 수신번호 30072-15512
 수신번호 30072-15512

수신번호	30072-15512
발신번호	30072-15512
수신일자	1991. 7. 29
발신일자	1991. 7. 29
수신시간	10:30
발신시간	10:30
수신장소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26-5
발신장소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26-5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26-5 (주) 피혁가자

1. 차수 30072 - 15512 (1991. 7. 29)건의 권리입니다.
 2. 본권자 피혁가자(주)는 본권자 피혁가자(주)의 피혁가자(주)에 의해서
 피혁가자(주)의 피혁가자(주)에 의해서 피혁가자(주)의 피혁가자(주)에 의해서
 피혁가자(주)의 피혁가자(주)에 의해서 피혁가자(주)의 피혁가자(주)에 의해서

가. 피혁가자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26-5 (주)

대표 서명

나. 임원 : 부장 김철민 (전화번호 1298)

다. 하천명 : 전진천 (전주시)

라. 양식면적 : 제방 - 1.320 ㎡ 호안 - 1.320 ㎡

구덩이 (양식) - 1 개소

- 1. 영문본 1부 (기승부)
- 2. 허가사본 1부 (기승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26-5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26-5



가. 행사기간 : 92. 4. 1 ~ 6. 30 (90일간)

나. 선정기준 : 전국의 시·군·구·읍·면·동으로 선정

우수기 이충공사로 지정 대상

현직계좌 선정기준으로

부부 부처 부처 부처

다. 선정대상 : 공제회가입 도안주택으로 선정

첨부 : 실시세칙 선정회차 (안) 1부

< 제 2 회 >

수신 : 수신처참조

발신 : 국수

제부 : 위등기등본

1. 이사에서 신청한 실거래가액에 대하여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 11조의 적용을 받는다

사실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천에 포함시켜

아래 제 1항에

첨부 : 실시세칙 선정회차증 1부

수신처 : 전주지 부처부처 부처부처 부처부처

(주) 전주세득 시정

< 제 3 회 >

수신 : 충청북도지사

발신 : 국수

참조 : 처수외 참

제부 : 위등기등본

(주) 전주세득 시정

시정에서 다른 실거래가액에 신청이 있어 하천에

문서번호 건설30072 - 339

시행일자 1992. 4. 1.

(경유)

수신 내루침세

참조

취급	지원	준
보존		
회계수		
작성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기안	취급수	관리처장
		협조

제 목 회산리침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1992. 4. 1

1. 청주시 북천구 무아동 726-5번지 (주)진중씨도
 시흥 도로 부설 회산리침 하천공사 시행하기 위하여 회산리침세 30호
 의 2호 하천에 대한 회산리침세 11호 2호에의거 실시계획을
 인가코자 합니다.

가. 의의가사: 청주시 북천구 무아동 726-5번지
 (주)진중씨도 시흥 도로

나. 의 의: 무주군 송천면 칠항리 1398번지선

다. 하천 명: 남대천 (중용하천)

라. 사업규모: 제방 1320m, 보 1개소, 구조물 (흙판 1개소)

첨부: 인가증 1부
 <제 2 호>

수신: 수신처참조

사무: 회산리침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1. 인세세 662 (92. 3. 30) 호의 판서합니다.

2. 기사에서 미충한 회산리침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하오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으시
 기 바랍니다.

가 ~ 라항제 1항과 같은

첨부: 인가증 1부

수신처: 청주시 북천구 무아동 726-5. (주)진중씨도 시흥 도로. 4

< 제 3 편 >

수신: 충청북도지사

발신: 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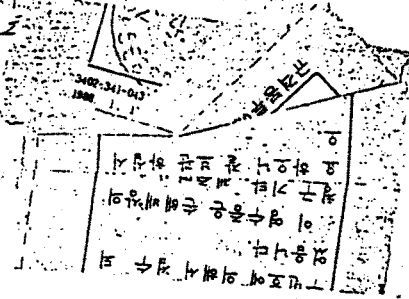
참조: 시수사장

제목: 죄 등 진

1. (주) 충청비료 사행도로부치 씨양리청 바천공사 사행사가
1398년 12월 15일 (충청비료) 씨양리청 바천공사 사행사가
당사 씨양리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30조의 2 조 바천공
청이 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11조 2항 바천공 바천공 청이 청 바천공
사행사가 씨양리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
사행사가 씨양리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

가 ~ 다 청이 청 바천공

첨부: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



< 제 4 편 >

수신: 충청비료

제목: 죄 등 진

1. (주) 충청비료 사행도로부치 씨양리청 바천공사
사행사가 당사 씨양리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사

가 ~ 다 청이 청 바천공

첨부: 바천공사 청이 청 바천공



민사
 협조기관: 563-860
 협조기관: 340-113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 229-1 / 전화 (0657) 22-2221 / 전승 209

시행일자 1992. 2. 10

(경유)

수신 전주시 육진주 우아동 726-5

참조 (주)정증매표. 서평도

취급	권원	결재
보통	승영구	[Red Stamp: 210]
주공	[Signature]	
특장	[Signature]	기각됨
기안	천을수	승리자장도

일괄기안전승추진

제 목 피관리청 하천공사 시행 허가

1. 민원 제 977 (91.5.22) 로로 귀하가 신청한 피관리청 하천공사
 시행 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 73조 제 2항에 의거 전라북도지사(이하
 지방국토관리청장)로 부터 시행인가 되며 동법 제 23조 제 2항에 의거
 허가 하오너 규정에 명시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시고 공사 완료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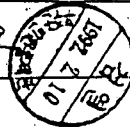
가. 피허가자: 전주시 육진주 우아동 726-5 (주)정증매표. 서평도

나. 위치: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398번지선

다. 하천명: 남하천 (순음하천)

라. 공사개요: 제방 - 1320M, 호안 - 1320M, 구조물(홍판) - 1개 2.

첨부: 피관리청 하천공사 시행 허가 (안) 1부



< 제 2 안 >

수신: 충청북도지사

발신: 무주군수

X. 1992년 2월 3일 14시 37분 (1992.2.3)

참조: 치수확장

제목: 위 등 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26-5번지(주)전충대륙시정
 로부터 무주군 송천면 청양리 1398번지선 남대천 (준용하천) ^{하천명} 하천
 시행처가 신청에 대하여 분사협시행 하천지킴이 카드와 정제 하천으로서
 행정처의 하천지킴이 73조 4항에 의거 분도지사 6에 의지 행정국토관리청장
 로부터 사협인가되어 동지킴이 23조 4항에 의거 허가하천이 등록하천으로
 기존에 시정하여주시고 카드에의 첨부사제시한 조건의 차질 없이 추진
 될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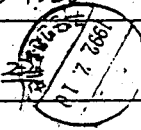
가. 피허가자: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26-5(주)전충대륙 시정

나. 위 치: 무주군 송천면 청양리 1398번지선

다. 하천 명: 남대천 (준용하천)

라. 공사개요: 제방-1320M, 토안 1320M, 구조물(홍판)-1개소.

첨부: 하천지킴이 하천공사 시행허가(안) 1부



< 제 3 안 >

수신: 송천면장

발신: 군수

제목: 위 등 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26-5번지(주)전충대륙시정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지킴이 시행허가 분사협시행 하천지킴이 카드와 정제 하천으로서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안』

허가번호제 3 호

○ 피허가자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726 - 5번지

성명 : (주)전중 대표 : 서 병 도

하 천 명	공사의종류	공사시행의위치	공사의 목적과 사유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남대전(준용하천)	축계공-1320M 호안공-1320M 구조물공- 1개소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1398 번지선	농경지와 인가보호 홍수피해의 절감과 식량증대	공사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귀하가 출원한 비 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과 허가함.

1992. 2.

무 주 군 수

1. 하천법 제30조의 2 및 하천에 관한 허가 사무처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허가조건중 5.6항을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동인가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착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은 착수한 날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3. 본 공사는 반드시 설계 내용대로 시공 하여야 하며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하고 변경을 요할시에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고 시공 할것이어야 한다
4. 공사에 착수한 때에는 착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청에 월별 예정공정표와 사진첨부 공사착수 신고하고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 및 설계도와 비용정산서들 갖추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공사착수 또는 준공기간 연장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하천법 제33조의 2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한 허가 수수료는 공사비(용지 및 보상비들 제외한다)의 1/1,000에 해당하는 무주군 수입증지들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6. 하천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사비 전액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은행(근금고)에 허가청과 피허가자 공동명의로 미리 예치하고 영수증을 ~~제출후 회신증을 거부~~ 받을 것이며 예치된 금액에 대하여 피허가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정 비율에 따라 인출할 수 있으나 허가청은 감독 공무원과 협의후 타당치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도 있다.
7. 투자 사업비와 폐천부지 가격을 대비하여 투자 사업비가 많을 때 초과 투자 사업비에 대하여는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본 공사 시행으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를 양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폐천부지와 소요 공사비는 하천법 시행령 제45조(폐천부지등의 양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폐천부지등의 양여 신청) 규정에 의거 정산 처리하며 충청북도와 협의조건을 이행할 것 ~~이어야 한다~~
9. 기공승낙 미 징취본(거주불명)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준공검사 신청시 조치한 근거 서류를 첨부할 것 ~~이어야 한다~~
10. 하천 부속물(제방, 호안, 구조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1. 본공사 착수전에 설천면 정량리 비례마을주민과 이해관계인등(용화면주민포함)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있을 후 동의서를 제출하고 착공할 것이며 만일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사업보다 우선 조치하고 이해와 동의가 안될 경우에는 본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12. 본공사 착수이전 사전 재해에 안전을 대비하여야 하며 우수기에 대비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등에 대하여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이며 이르인하여 허가청에 민형사상(보상)등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13.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목적 및 사유가 관광단지 개발로 되어 있는바 본사업 완공후 관광단지 개발의 허가요건이 되지않아 관광단지 개발을 하지 못하여도 허가청에 하등의 민형사상등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허가의 실효 및 회복은 하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다.
15. 본공사를 추진하다가 중단할 경우에는 허가청이 대집행하고 예치금중에서 정산 처리한다.
16. 본공사 시행에 따라 타법이 저축될 경우에는 미리 개별법에 의한 허가등을 득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17. 하천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만일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가 발생시에도 피허가자가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허가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부관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하천법 및 하천에 관한 허가사무처리 규정에 따른다.